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의명 : 제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20. 1. 8.(수) 09:32

□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한상혁 위원장

김석진 부위원장

허욱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음

제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2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의안·정책관리팀장님,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전혜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전혜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0년도 제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자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2019년도 제65차 및 제67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그리고 2019년도 제64차 및 제66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4건 및 <보고안건> 2건이 원안대로 의결·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 (주)티비씨 (2020-02-002)

○ 한상혁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주)티비씨”에 대하여 지상파방송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장대호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주)티비씨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심사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 이유는 2019년 12월 13일에 (주)귀뚜라미홀딩스가 신청한 (주)티비씨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에 대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신청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심사 기본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7명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2명, 경제·경영·회계분야에서 1명, 법률 분야 1명, 시청자·소비자분야에서 1명 등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심사항목은 방송법 제15조의2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심사기준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보호,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사 방안입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심사기준을 토대로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자 대상 의견청취 내용 등을 반영하여 심사 의견을 제시합니다. 심사위원별 심사의견을 제시하고, 위원 간 토론을 거쳐 심사위원회의 종합의견을 결정하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변경승인 여부 및 승인조건 등을 의결하게 됩니다. 다음 추진일정입니다.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해

울산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와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월 말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2월 초에 위원회 의결 및 사업자 통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티비씨는 지난 연말 재허가를 받으면서 향후 최다액출자자 변경허가 심사에서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재허가 효력이 상실된다는 강력한 조건을 부과받았습니다. 현행 방송법 제15조의 2제3항은 승인을 얻지 않고 최다액출자자가 되는 경우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해 주식 또는 지분 처분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티비씨 지분을 약 28.7%를 보유한 최다주주인 귀뚜라미홀딩스가 방송사 최다주주로서의 공적 책임의식을 지니고 있는지를 비롯해, 티비씨의 소유, 경영 분리 운영 실태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 묻고자 하는데, 이번 최다액출자자 변경심사와는 별도로 티비씨가 최다주주 변경 과정에서 방송법 위반에 대한 점검 소홀로 재허가를 유보시키고 청문 개최, 재심사라는 행정력 낭비를 가져온 데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절차는 따로 진행 중입니까?

○ 장대호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현재 법률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그 내용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심사에는 티비씨뿐만 아니라 울산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심사도 병행합니다. 방송의 영향력을 통한 최다액출자자 기업의 사익 추구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며, 의결 주문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의견 있으십니까?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당초 티비씨 재허가 심사위원장을 제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재허가 심사기간 중에 원래 재허가 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한 방송사업자가 심사기간 중에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해 놓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계획에 맞지 않는 재허가 심사를하도록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소홀하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특히 티비씨의 최다액출자자인 귀뚜라미홀딩스 쪽은 원래 지역민방이 출범할 때부터 SBS의 2대 주주로 방송사업을 하는 등 오랫동안 방송사업을 해 온 사업자가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 옥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행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변경승인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심사를 할 수밖에 없고, 이 심사계획에 대해서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재허가 심사 기간 중에 자기를 내부에서 이렇게 지분을 바꾸고 합병하고, 다시 말하면 최대주주가 바뀐 것이지요. 법규를 검토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아예 무시를 했는지, 몰라서 못 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의구심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 공동재산인 전파를 배분받아서 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전파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규 준수는 물론이고, 방송사 경영에 대해서도 임의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허가기관의 필요한 절차를 빠뜨리지 않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준법정신이 없다고 봐야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두 번의 심사를 거쳐야 되는 행정력 낭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필요한 절차를 사무처에서도 법률검토 중에 있다고 하지만 신속하게 법률검토를 마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 나타난 지난 연말부터 계속된 심사기간 중에 방송사업자들이 그런 여러 가지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또는 필요한 법규를 지키지 않는다거나 하는 그런 허술한 부분들이 티비씨뿐만 아니고 타 방송에서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업자들이 이번 기회에 좀 더 방송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염중한 책임의식, 또 공적 책임의식 그리고 준법정신 이런 부분들에 절대로 소홀함이 없도록 염중한 경고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사무처에서 절차를 밟아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마지막으로….

○ 김창룡 상임위원

- 의견 없습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별도로 저희 법률검토하는 것 외에 이번 변경승인 심사과정에서도 최대주주에 대한 의견 청취를 통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를 분명하게 물어볼 생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일치된 의견으로 원안에 동의하시되, 재허가 심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 및 조치를 요구하셨으니까 사무처에서는 그 부분 신속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 장대호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주)티브로드 및 (주)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에 관한 건 (2020-02-003)

○ 한상혁 위원장

- 이어서 <의결안건 나> “(주)티브로드 및 (주)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 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방송지원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주)티브로드 및 (주)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합니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방송법 제9조제2항 및 제15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주)티브로드 및 (주)티브로드동대문방송과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간 법인 합병에 대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경과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9일 해당 사업자의 변경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을 우리 위원회에 알려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7월 19일에 유료방송 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 1차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11월 1일에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방통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 제2차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심사배점(안)을 일부 조정하여 오늘 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는 12월 30일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사전동의를 우리 위원회에 요청해 왔습니다. 과기부 심사결과는 755.44점을 획득했고, 조건을 부가하여 변경허가 사전동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청내용입니다. (주)티브로드 및 그 자회사인 (주)티브로드동대문방송이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와 법인 합병을 위한 변경허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입니다.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 개요는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계획 주요내용입니다. 심사기준은 방송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용하여 6개 심사사항, 9개 심사항목으로 구성했습니다. 그 밑에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가방식입니다. 심사위원이 심사항목별 주요 심사내용의 각 사항을 5단계 척도로 평가한 후 심사위원 점수의 평균점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심사항목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하되 최고·최저점수를 준 심사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1인의 심사점수만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점 만점 기준에 650점 이상 획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동의를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지난번 보고드렸던 심사계획(안) 중에 배점 변경된 사항을 박스 안에 있는 내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익성 실현 가능성 관련해서 IPTV사업자가 SO의 지역사업권을 행사함에 따라 보다 높은 공익성 담보를 위해 관련 배점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공익사업 참여 실적 및 계획 등을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공적책임 관련 실적 및 계획 등으로 변경하고, 배

점도 10점 상향했습니다. 조직운영과 관련해서는 협력업체 등에 대한 고용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판매망/고객센터 등 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에 보다 높은 배점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 및 인력 구성현황 및 계획에서는 10점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재무 안정성 관련해서는 자기자본 순이익률 등 재무관련 비율과 '합병의 재무적 효용 등'의 심사취지 및 내용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하나로 통합하고 10점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내용은 뒤에 <붙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는 인사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미디어 분야 2인, 법률 분야 2인, 경영·경제·회계 분야 2인, 기술 분야 1인, 시청자·소비자 분야 1인 등 총 9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관련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심사위원회 2박 3일간 합숙 심사로 진행할 예정이고, 주요임무는 방통위에서 의결한 심사 계획(안)을 토대로 신청법인의 제출서류와 과기부 사전동의 요청내용 등을 검토하고, 심사 기준에 따른 평가 및 심사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심사계획(안)에 규정되어 있는 않은 심사 관련 세부사항 및 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등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재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의견청취는 사업자 제출자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의견청취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심사기간 중 신청법인 및 존속법인의 대표자, 편성책임자, 최대주주의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변경허가에 대한 사전동의 여부, 사전동의 조건 등 정책건의 사항을 반영한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서를 방통위에 제출하면 방통위의 사전동의 여부 및 조건 부과 등을 의결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사전동의 여부를 위원회 의결하고 과기정통부에 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계획(안)은 <붙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육 상임위원

- 이번 안건은 IPTV사업자가 케이블TV사업자를 합병하는 국내 첫 사례로 향후 방송통신업계에 주는 산업적·정책적 의미가 매우 큰 사안입니다. LGU+의 CJ헬로 인수를 시작으로 그동안 방송사와 통신사 간 닫혀 있던 M&A에 빗장이 열렸습니다. 앞으로는 통신사를 중심으로 유료 방송시장과 관련 결합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 앞서서 과기정통부는 티브로드가 SKB에 합병될 경우 결합상품 확대로 SKT에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관련업계의 우려에 대한 해소 조치 등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우리 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사전동의제의 취지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결과를 참고하고, 과기정통부의 심사결과에 대한 동의 여부와 더불어서 방통위 차원에서 방송통신산업 활성화와 시청자 및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병심사

평가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제시한 심사항목의 배점 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통신사가 최다주주가 됨에 따라 보다 높은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익사업의 참여실적 및 계획을 공적책임 관련 실적 및 계획으로 바꾸고, 심사 기준의 배점을 20점에서 30점으로 올린 것, 협력업체 등에 대한 고용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배점을 올린 것, 재무안정성 관련 심사항목을 통합해서 구체화하고 배점을 올린 것은 매우 합당하다고 봅니다. 사전동의 심사계획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존경하는 허 옥 위원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특히 SO는 지역성이 굉장히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난방송 그리고 총 선거, 지방선거 등 이런 정치 일정이 있을 때 지역에서 여러 가지 기여를 해 온 바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사에서도 충분히 잘 검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태는 약간 다르지만 CJ헬로 주식 인수를 한 LGU+는 이미 시작해서 가고 있고, 또 합병 형태로 티브로드가 SKB 쪽으로 합쳐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사업형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심사가 빨리 진행되어서 시장에서 시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시장의 지배력과 영향력, 성격 이런 것이 방송시장에서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더 방통위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 분명히 숙제로 떠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우고 있는 이런 통신사들의 방송사 합병이 아마 앞으로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법규상 사전동의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사실상 본 심사를 한다, 이런 자세로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기정통부의 심사와 달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분명히 과기부의 심사와는 다르게 좀 더 정치하게 들여다보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통신업자보다는 방송사업자, 지역 SO들, 여기에서 지역성 구현이 가능한지, 통신사업자가 과연 그런 데 대해서 어떤 공적 책임의식을 가질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주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에 방송의 공적책임에 대한 배점을 상향해서 올린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배점을 보니까 공적 책임을 상향했고, 그다음에 지역성을 강화하기 위한 배점도 전체가 180점 정도 되기 때문에 시청자 권익보호에 못지않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합병될 경우에 특히 우리 방송시장에는 많은 비정규직들이 있습니다. 티브로드도 많은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동안 계속 고용불안에 대한 호소를 하고, 또 집회를 계속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정규직 채용 문제를 원활하게 고용불안을 씻을 수 있도록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번 사전심사에서도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배점도 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관련 배점이 조직/인력 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중 판매망/고객센터 등 인력운영, 이것이 협력업체 이야기지요? 협력업체 상생을 위한 배점이 상향된 것이지요?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원래 20점이었는데 30점으로 상향을 했고, 내부의 비정규직 관련 사항과 함께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업체 상생방안 관련 사항입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협력업체 또 비정규직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용불안을 씻을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방송 사업은 종사자들이 어떻게 보면 안정감을 가지고 방송에 종사하기 때문에 이런 고용안정은 대단히 중요한 심리적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배점도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이번 심사에서 허 옥 심사위원장님이 잘하시겠지만 사무처도 이런 데 대한 준비를 잘해서 잘 관찰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로 지적을 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방통융합 시대에 국내 통신사가 가진 자본력과 기술력이 방송계에 지각 변동을 가져오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니까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도 1월에 해야 하고, 티브로드 관련된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도 1월에 해야 하는데 저는 이런 경우 아까 존경하는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심사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행정서비스라고 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떤 형태로든 신속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일치된 의견으로 원안에 동의하시고, 합병 후 법인의 공적책임 구현 가능성, 지역성 문제, 그리고 고용안정 문제, 시장지배력이 확대·강화됨에 따른 시청자 이익침해 예방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김창룡 위원 말씀하신 대로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1월 15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0년 제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09시 58분 폐회 】